

베이징으로 부터 25 년, 그리고 UN 으로 부터 75 년:
페미니스트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

우미선 [아시아 태평양 여성, 법률 개발 포럼 대표]

2020 년은 국제사회의 여성권과 지속가능한개발에 있어 중요한 궤적을 남기는 해이다.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채택으로부터 25 년, UN 안보리 결의(역주 : 2000 년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 - 1325 호) 20 년,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 채택 5 년, 그리고 UN 창설 75 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권, 공정, 정의, 평화를 위한 진실하고 의미있는 발전을 얼마나 이뤄냈는가? 짧고 명료하게 대답하자면 많이라고는 하기 힘들며, 사실 떠오르는 도전과제로 인한 퇴보를 감안할시 실제로 그러할 것이다. UN 헌장으로부터 시작해 존엄성, 인권, 기본적인 자유, 정의, 개발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담은 국제사회가 만들어낸 수많은 문서와 헌장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사실일까?

자, 189 개 국가가 제 4 차 베이징여성대회에서 베이징선언및행동강령을 채택한 1995 년으로 돌아가보기로 하자. 이 선언과 행동강령은 전세계 여성운동에 있어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로 간주되는데, 이는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가장 종합적이고, 보편적으로 합의된 액션플랜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강력한 도구로 남아있긴 하지만, 가장 크게 실패한 부분은 책임성 기제의 결여였으며, 이는 우리가 체제 변화를 통해 모든 종류의 가부장제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바 우리의 투쟁이 훨씬 거대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반면에 1995 년은 브레턴우즈회의(*Bretton Woods Conference*) 및 협정에 따라 창설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세계은행(*WB, World Bank*)의 50 주년(1994)에 가까운 해이자 구조조정프로그램 혹은 채무가 도입된지 15 년이 넘는 시점이다. 또한 1995 년 초, 그 때 당시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따라 근 10 년간(1986 년~1994 년)의 협상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창설되었다. 책임성 기제가 결여된 베이징선언및행동강령 혹은 2030 지속가능개발을위한의제와는 다르게,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다른 국제무역, 재정 및 투자협약은 비준국들로 하여금 재화, 용역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역과 시장개방을 전적으로 법적 자유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가의 흥미에 맞게 국가 법령 개선을 강제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수십년간 이뤄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보건, 교육, 물, 에너지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사유화가 이뤄졌다. 두번째로 사람의 생명으로 부터 우리의 지구까지 거의 모든것이 상품화 되었다. 세번째로 기업의 힘이 예상치 못한 정도로 거대해져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정책이 수정되게끔 했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적 사상과 정책은 여성으로 하여금 가난, 의료, 자녀 및 노부모 돌봄을 개인의 문제로 다루게하였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게끔 하였다.

아태지역 및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독재 및 전제 정권은 여성과 대중의 운동에 따른 업적을 위협하는 주요한 도전과제를 부과하였다. 글로벌위트니스(*Global Witness*)에 따르면, 매해가 거듭날 수록 시민과 그들 지역사회의 인권,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 여성인권가들에게 더 위험해진다고 하였다. 아태지역 내 대다수의 정부가 대민주주의(*large democracy*)의 일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질은 보장할 수가 없다. 그 근거로는 협치주의 내 군권력의 개입, 지속되는 국내외 갈등, 기업의 정치적 의제 점령, 근본주의 확대 등이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자 앞서 언급한 운동이 지속되기엔 민주적인 공간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태지역 내 여성의 정치적 대의권 및 참여는 전세계에서 최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의사를 결정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휘방케하는 시스템과 결합되어, 의무를 짊어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흐리고자 하는 조심스러운 노력은 책임성 부재를 위협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억압의 상호 연결된 체계가 어떻게 다양한 국가간, 부유층과 빈곤층간, 그리고 남성과 여성간에 부, 자원 그리고 권력의 불균형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큰 규모로 조장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내었다. 최고 취약계층 공동체가 이 전염병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정말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증거가 있다. 일자리와 생계 소실, 빈곤의 심화와 가계부채 증가, 가정폭력 급증, 여성이 급여를 받지 않는 돌봄 업무의 폭증, 그리고 사회운동과 민주적인 공간에 대한 보안법 명목의 독단적 제재가 생겨났다.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 및 정치 협치구조와 이러한 체계에서 비롯되어 제안된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진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과오를 바로잡고 우리의 세계를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면서도 정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목표의 대안과 연대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페미니스트와 사람들의 운동의 힘에 있다. 페미니스트 및 여성 운동은 아래의 다섯가지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 짜여진 개발 정의(Development Justice)의 더욱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고안하는데 있어 선두에 자리해왔다.

a. 재배분적 정의(Redistributive Justice) : 공중보건정책, 누진세, 토지를 포함한 국가자원의 보유 등 재분배 정책은 부유층으로부터 빈곤층을 향한 자본의 흐름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아마도 국가의 공공 정책에 가장 의지하기 쉬운 이들이기에 가장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도 이들은 가장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동시에 임금연동 연금, 보험, 임금 안전망 등의 사적 시스템 혹은 개인적으로 소득과 연관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기에 가장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현실은 약 지난 20 년간 기업세는 절반으로 줄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세는 두 배로 늘어났다.

* 소비세 : OECD 국가 기준 1965 년 2.2%에서 2014 년 20% 이상으로 높아짐.

b. 경제적 정의(Economic Justice) : 사람들이 경제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경제가 사람들을 위해 일하게 해야한다. 공공사회보장 및 실현 자원,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투자, 모두를 위한 생계임금의 설정,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일상 노동자들을 포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되는 등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역할 및 단결권의 중요성은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다시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성의 급여를 받거나, 받지 않는 돌봄 업무에 대한 재분배 또한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며 사회 구성원이 같이 이를 인식해야 한다. 현실은 아태지역에서 내핍으로 인해 여성이 이주 노동자화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여성 이주 노동자의 대부분은 일상적이거나, 별다른 노동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거나, 또한 불안정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갖게 되는데, 이는 주로 내국인 노동자가 전통적이고도 저평가된 성역할에 갖혀있기 때문이다.

c. 사회 및 양성정의(*Social and Gender Justice*) : 정책은 절대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수의 그리고 범사회적으로 모든 차별, 배제 그리고 주변화를 뿌리뽑을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은 권력의 문제이다. 정책이라함은 마땅히 권력관계를 변화시켜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권리를 가진이들로서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의 몸과 공동체,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목표해야 할것이다.

d. 환경적 정의(*Environmental Justice*) : 역사적인 오염자로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자원민주주의를 능동적으로 실현하여 지역민들, 특히 여성이 지역의 자원과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고의 방향으로 활용할 것을 결정하게끔 해야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기후대응농업을 권하는 것 대신에 그들로 하여금 식량 자주권과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한다. 아태지역 및 전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증가하는 군비(*military spending*)는 환경과 기후 불평등의 주 원인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e. 대중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to Peoples*) :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그리고 정의로운 협치주의라는 것은 국민들, 특히 여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삶, 지역사회 그리고 미래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지니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자유롭고, 우선적이고, 잘 알고, 일관적인 동의를 하게끔 하는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국가의 의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가 국가 혹은 국가가 아닌 주체로부터 침해당했을때 정의와 구제에 접근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을 포함한다.

아시아태평양여성·법률·개발에관한포럼(*APWLD : Asia Pacific Women, Law and Development*)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라는 것이 다른 사회적 정의 및 시민운동과 협업할 수 있는 역량과 연대를 가진 강하고 자율적인 여성운동이 있을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다자주의는 현재 위험한 갈래에 서있다. 특히 대중이 그들의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인 민주주의의 공간이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불어 기업 권력이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디지털 격차를 만들어 국제적인 정책 형성 공간을 식민지화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정도로 함께 겪는 위기를 통해 정말 흔치 않은 기회를 맞이하며 아마도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역사적 순간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바로 지금이 페미니스트의 비전과 결정을 앞세운 시민운동이 모든 형태의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반한 정의롭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내야할 때이다.